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26.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9월 20일

나. 발 의 자 : 박유규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9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9.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유규 의원)

가. 제안이유

-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바,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심폐소생술 교육의 구청장 책무(안 제3조)
- 심폐소생술 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민 등의 교육(안 제5조)
-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안 제6조, 안 제7조)

- 심폐소생술 교육 사후관리(안 제8조)
-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고위험군 환자 가족이나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 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 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및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주민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박유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0
----------	-----

발의년월일: 2017년 9월 일

발 의 자: 박유규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바,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심폐소생술 교육의 구청장 책무(안 제3조)
- 다. 심폐소생술 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구민 등의 교육(안 제5조)
- 마.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안 제6조, 안 제7조)
- 바. 심폐소생술 교육 사후관리(안 제8조)
- 사.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편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관내 초·중·고등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